

# 學校法人 信一學園 理事會 會議錄

(2021학년도 제1차)

회의소집통보일자		2021. 4. 15.	
이사정수	10	재적이사	10

1. 일 시 : 2021년 4월 23일(금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20 학교법인 신일학원 회의실
3. 출석이사(8명) :

이사장 이 상 균,  
 이 사 김 윤 희, 이 사 박 병 대, 이 사 박 영 국  
 이 사 서 유 석, 이 사 이 영 춘, 이 사 이 철 구  
 이 사 정 두 현 (가나다순)

4. 출석감사(2명) : 김 학 신, 최 문 규
5. 결석이사(2명) : 이 세 웅, 이 원 희
6. 결석감사(0명) : 없 음
7. 회의안건
  - 1) 2020학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학교법인 신일학원)
  - 2)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이 상 균	정 두 현	이 영 춘	최 문 규	박 영 국
김 윤 희	박 병 대	김 학 신	박 영 국	이 철 구

8. 보고안건

- 1) 서울사이버대학교 2020학년도 추경예산 전용 보고의 건
- 2) 신일중·고등학교 학교회계 간주처리 예산 확정 보고
- 3) 신일중·고등학교 교직원 정년퇴직에 따른 면직 보고

9. 회의진행

이상균 이사장은 법인사무직원으로부터 재적이사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됨을 보고 받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박영국 이사의 기도가 있는 후 의장은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하다.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차회의록 낭독이 있는 후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없이 받다.

10. 안건심의

이 사 장 : 제1호의안 2020학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신일중·고등학교 행정실장, 서울사이버대학교 행정부총장, 법인사무직원에게 상세설명을 요청하다.

행 정 실 장 : 별도로 배부된 회의자료를 통해 2020학년도 신일중학교 학교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하다. 신일중학교의 결산은 세입 3,795,954,217원, 세출 3,678,125,737원이며, 차인잔액은 117,828,480원임을 보고하다.

행 정 실 장 : 별도로 배부된 회의자료를 통해 2020학년도 신일고등학교 학교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하다. 신일고등학교의 결산은 세입 11,020,051,835원, 세출 8,996,058,099원이며, 차인잔액은 2,023,993,736원임을 보고하다.

행 정 부 총 장 : 별도로 배부된 회의자료를 통해 2020학년도 서울사이버대학교 학교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하다. 대차대조표의 자산총계 118,952,334,604원, 부채와 기본금총계 118,952,334,604원이며, 운영계산서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50,918,020,138원으로 전년대비 8,299,670,851원 증가하였고, 자금계산서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51,181,367,864원으로 예산대비 124,417,136원 적었다고 보고하다.

법 인 사 무 직 원 : 별도로 배부된 회의자료를 통해 2020학년도 신일학원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하다. 대차대조표의 자산총계 224,082,856,257원, 부채와 기본금 총계 224,082,856,257원이며, 운영계산서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559,615,158원으로 전년대비 413,616,342원 감소하였고, 자금계산서 수입과 지출은 각각 2,502,907,525원으로 예산대비 1,083,475원 적었다고 보고하다.

이 상균	정 두형	이 명준	최필재	서우석
김윤리	박병대	김학신	박영숙	이찬주

법인사무직원 : 별도로 배부된 회의자료를 통해 2020학년도 학교법인 신일학원 수익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하다. 2020학년도 수익회계의 재무상태는 자산 4,828,775,115원, 부채 및 자본총계 4,828,775,115원이고, 당기순손실 18,925,721원에 기말에 1,627,820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금계산서 수입과 지출은 각각 158,785,785원으로 예산대비 785원 많았다고 보고하다.

이 사 장 : 결산보고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 의견을 피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김학신감사 : 학교법인 신일학원과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최문규감사 2020학년도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동 특례규칙에 따라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의 회계처리가 공정하게 되었음을 보고하다.

이 사 장 : 2020학년도 결산 보고 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말하다.

김윤희이사 : 2020학년도 결산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하고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의하다.

서유석이사 : 김윤희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박병대이사 : 서유석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서유석 이사의 동의와 박병대 이사의 재청이 있는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 이에 이사장은 제1호의안 2020학년도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학교법인 신일학원 결산(안)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이 사 장 : 제2호의안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법인사무직원에게 상세설명을 요청하다.

법인사무직원 : 배포된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수익사업체 매각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설치학교 장의 임기변경, 육아휴직 기간변경 등 붙임 1.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서유석이사 : 수익사업체 매각 및 법과 규정에 따른 정관 변경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다.

이영춘이사 : 서유석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정두현이사 : 이영춘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영춘	정두현	이영춘	최문규	서유석
김윤희	박병대	김학신	박영후	이철규



이 사 장 : 이영춘 이사의 동의와 정두현 이사의 재청이 있는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 이에 이사장은 제2 호의안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은 원안(붙임 1.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시·구조문대비표)대로 승인되었음을 서포한다.

이영춘	정두현	이영춘	최원규	서우석
김윤리	박병대	김완선	박영주	이철규

이 사 장 : 제3호 보고안전 신일중·고등학교 교직원 정년퇴직에 따른 면직 보고  
를 행정실장에게 요청하다.

행 정 실 장 : 2021년 6월 30일 부로 신일고등학교 이동율 시설과장(일반7급)이,  
2021년 8월 31일 부로 신일중학교 이태용 교사, 신일고등학교 성문  
경, 손덕준 교사가, 2022년 2월 28일 부로 신일중학교 김창호 교사가  
정년퇴직하게 되었음을 보고하다.

이 사 장 : 보고안전에 대해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다.

## 12. 폐 회

의장이 다른 기타 부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김윤희 이사의 폐회 동의와 서유석 이  
사의 재청이 있는 후 폐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박영국 이사가 폐회기도를 마치니 동일  
오후 2시 50분이 되다.

2021년 4월 23일

이 사 장 이 상 균 이 상균

이사 김 윤 희 김윤희

이사 박 병 대 박병대

이사 박 영 국 박영국

이사 서 유 석 서유석

이사 이 영 춘 이영춘

이사 이 철 구 이철구

이사 정 두 현 정두현

감사 김 학 신 김학신

감사 최 문 규 최문규

(가나다 순)

# 붙임1.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8조(수익사업체의 명칭) 제27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일단체연수의 집을 경영한다.</u></p>	<p><b>제28조 삭제</b></p>
<p><u>제29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28조의 수익사업체는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81길 149번지에 둔다.</u></p>	<p><b>제29조 삭제</b></p>
<p>제34조(임용) ① &lt;생략&gt;                      ② 각 학교의 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등교육기관의 장의 경우 임기는 <b>4년</b>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lt;생략&gt;                      3.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경우 임기는 <b>2년</b>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lt;생략&gt;                      ④ 대학교육기관의 <b>부총장, 학부장, 대학원장, 각 처부처장 및 부속시설의 장 등의 보직</b>은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p>	<p>제34조(임용) ① &lt;현행과 같음&gt;                      ② 각 학교의 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등교육기관의 장의 경우 임기는 <b>2년</b>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lt;현행과 같음&gt;                      3.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경우 임기는 <b>3년</b>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lt;현행과 같음&gt;                      ④ 대학교육기관의 <b>보직(학과장을 제외한다)</b>은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p>
<p>제36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5. &lt;생략&gt;                      6. 제35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b>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                      6의2. ~ 11. &lt;생략&gt;</p>	<p>제36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5. &lt;현행과 같음&gt;                      6. 제35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b>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b>                      6의2. ~ 11. &lt;현행과 같음&gt;</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b>  <b>②(경과조치) 정관 개정 당시 임용된 총장의 임기는 개정된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라 3년으로 한다.</b></p>

이성진	정두현	이영춘	계문규	서욱진
김은희	박병대	김관세	박영욱	이철주